

“함께 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1. 정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22.8.31, 붙임1 참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붙임 2 참조)’와 관련하여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2. 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건의 반영사항 >

① 2022년 건설업 쿼터 추가확대

- (현행) 2,400명 → (개선) **2,760명, 360명** ↑
※ ‘22.9.19~9.29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②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개선

- **(지사간 이동제한 완화)** (현행) 지사간이동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시도 지사간 이동 추가허용**
※ ‘22. 하반기 세부지침 마련예정
-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현행)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개선)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현장의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22. 9.7 시행

붙임 : 1.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22.8.31) 1부.

2.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관련 지침개정 1부. 끝.

※‘붙임’은 우리사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담당자(과장) 이은정

부장 권태운

사무처장 -

전결(/)

회장 김임식

시행 울산광역시회-273 (2022. 9. 8) 접수

우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http://www.cak.or.kr/울산>

/ 공개